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 지방행정혁신사업별예산제도·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관련 인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595명 ⇒ 2,616명 (증2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9명 ⇒ 1,460명 (증2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원 : 증 21명
 - 일반직 : 21명(4급1, 5급4, 6급7, 7급4, 8급5)
- 한시직급정원 존속기한
 - 본청(4급1) : 2007년 6월 30일까지
- 한시정원 존속기한
 - 본청(6급1) : 2006년 12월 31일까지
 - 본청(5급1, 6급1, 7급1) : 2007년 6월 30일까지
 - 본청(6급1, 7급1) : 2007년 12월 31일까지
 - 본청(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 2008년 10월 30일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산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39명”을 “1,460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95명을 2,616명(증원 21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47명을 968명(증원 2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직급정원)집행기관의 정원 중 별표의 본청정원 4급 1명의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③(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6급 1명의 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명(5급1, 6급1, 7급1)의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명(6급1, 7급1)의 정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5명(4급1, 5급3, 6급4, 7급2, 8급5)의 정원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화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616	968	65	1,290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 계	1,065	801	40	63	161
	2~3급	1		1		
	3 급	7	5		1	1
	4 급	56	37	7	4	8
	5 급	208	165	7	14	22
	6 급	356	271	13	18	54
	7 급	377	279	12	22	64
	8 급	59	43		4	12
	9 급	1	1			
일 반 정	소 계	4	3	1		
	5 급	2	1	1		
	6 급	1	1			
	7 급	1	1			
별정직	소 계	17	10	1	5	1
	1 급	1	1			
	5 급	2	2			
	6 급	9	3		5	1
	7 급	3	2	1		
	8 급	1	1			
	9 급	1	1			
연구직	소 계	139	1		109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8	1		91	26
지도직	소 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 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사	32			32	
	조 교	11			11	
기능직	소 계	275	93	23	57	102
	6 급	9	6	1	1	1
	7 급	29	10	3	4	12
	8 급	54	17	1	4	32
	9 급	88	24	8	29	27
	10 급	95	36	10	19	30

산·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59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생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616명</u></p> <p>1. : <u>1,460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한시정원)①~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⑨(생략)

제21조 (정원의 규정)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신설

○ 정원의 총수 : 2,595명 ⇒ 2,616명(증21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077,250	
°인건비	872,031	
- 기본급	399,070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4급(1명) : 20호봉 기준 - 5급(4명) : 18호봉 기준 - 6급(7명) : 18호봉 기준 - 7급(4명) : 15호봉 기준 - 8급(5명) : 12호봉 기준
- 수 당	246,712	
- 정액급식비	32,760	
- 교통보조비	32,760	
- 명절휴가비	49,881	
- 가계지원비	83,137	
- 연가보상비	27,711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물건비	50,94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	
- 직책급업무추진비	4,200	
- 직급보조비	42,8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	154,279	
- 성과상여금	13,299	
- 연금부담금	98,153	
- 국민건강보험금	18,441	
- 연금지급금	24,386	